

광주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나648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나64821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9. 16 선고 2021가단81773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부원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병주, 이상택

변론종결 2023. 11. 9.

판결선고 2023. 12. 7.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9. 16. 선고 2021가단81773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원상회복부분을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채권양도 및 그 통지를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기재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1. 인정사실의 기재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5행부터 제3면 제12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아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경과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125,000,000원에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2. 9. 22. 피고에게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원고에게 43,865,55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그 무렵 배당표는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는 2023. 3.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카단168호로 피고를 채무자,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금출급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23. 3. 21. 그 가처분이 인용되어 피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이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6 내지 8, 10호증”을 추가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여부

1) 관련 법리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특정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채무초과 여부

C는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E단체에 대한 채무(채권최고액 60,000,000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C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대해 피고는, C가 주식회사 F에 대하여 3억 5천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어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를 살핀다. 을 제5호증은 그 작성명의자의 표시조차도 없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거니와, 가사 그 기재내용대로라도 주식회사 G이 정산받을 내역이라는 것이어서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F에 대하여 3억 5천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C 개인이 주식회사 F에 대하여 3억 5천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 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의 주식회사 F에 대한 3억 5천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 주장대로 C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이 있다손 치더라도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되는바, 피고 스스로도 밝힌바와 같이 주식회사 F은 그 발행어음도 지급못하고 주식회사 G에도 하도급금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인만큼, 피고 주장의 위 채권은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오히려, 을 제8호증의 기재대로라면, 주식회사 G(대표이사 C)이 2017. 12. 19. 354,500,000원을 변제일을 2018. 6. 30.으로 하여 주식회사 F로부터 차용하였는데, C가 위 차용금 354,500,000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C의 소극재산만 354,500,000원이 더 증가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여부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자인 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대법원 2014다237192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기재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나.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기재부분(제1심 판결문 제12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위 인정사실” 다음에 “ 및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C는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사이로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2018. 1. 5. 20,000,000원, 2018. 6. 29. 20,000,000원을 대여하는 등에 비추어 이들간에는 특별한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의 변제가 늦어지자 변제를 독촉하게 되었고, C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소연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이르렀음을 밝힌 점(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각 대여 시점보다도 한참 뒤에 경로되었다), ③ 주식회사 G은 2018. 7. 31.자로 최종 부도처리되었는데, 이처럼 C는 그 대표의 개인 자력으로 위 주식회사 G의 부도를 막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위 주식회사 G의 부도일 이후인 2018. 8.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봄이 타당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상회복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로서의 배당을 받도록 하는 것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그리고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참조).

2) 원상회복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이상 그로 인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인하여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으로 피고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10,000,000원 중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돈 43,865,553원을 제외한 나머지 66,134,447원1) (= 110,000,000원 - 43,865,553원)은 여전히 이 사건 배당금인 40,000,000원을 상회하므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인 C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청구권 전부에 관하여 이를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손해행위취소청구와 당심에서 변경한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섭, 판사 오정민, 판사 정수현

별지

1) 계산상의 편의상 원금만 계산한다.